



■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의 의미 및 엄격하고 공정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촉구 보도자료 (2019.03.28.)

## 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거부는 위법입니다.

**자사고측 재지정평가 거부 단체행동 및 지정취소시 법적 대응 예고,  
재지정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법적 의무임...**

- ▲ 최근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자사고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사교육걱정은 자사고의 △재지정평가가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하며, △논란의 쟁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지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본질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 자사고는 영구한 학교형태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한시적 고교 형태임.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지난 5년에 대한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임.
- ▲ 자사고의 지정 목적은 입시 명문고 설립이 아니라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과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며, 이는 재지정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임.
- ▲ 이번 평가지표는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5년전 평가에 비해 10점(20점) 상향된 70점(80점)이고, 지난 평가와 달리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유예나 재평가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 또한, 평가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학교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 ‘매우미흡(D)’ 평가를 받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취소가 가능.
- ▲ 지난 평가지표에 비해 2019 평가지표는 △학교운영 항목, 교육과정운영 항목,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배점이 상향되었고, △재정 및 시설여건 항목, 학교 만족도, 교원전문성 영역의 배점은 하향 조정되었음. 자사고 지정목적의 핵심기준에 충실한 지표 강화로 평가됨.
- ▲ 평가지표가 강화된 이유는, 2014~2015년 평가에서 기준점수가 지나치게 낮았던 점과 기

준미달 자사고에 유예와 재평가를 허용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또한 지정목적 상실한채 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된 자사고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평가 요구 때문임.

- ▲ 자사고측은 평가기준 수정을 요구하며 평가 거부 및 법적 대응을 예고함. 그러나 재지정평가는 자사고의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일 뿐 자사고의 선택사항이 아님.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재지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
- ▲ 평가지표는 자사고의 유·불리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지정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평가지표가 되도록 강화되어야 함. 자사고는 지정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전형 비율 등을 통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재지정평가를 통해 증명해내야 할 것임.
- ▲ 재지정평가는 자사고의 학교 운영 성과 평가일 뿐 자사고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와는 다른 성격임.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떠나 자사고 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 방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인한 교육당국과 자사고의 갈등 국면이 깊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평가 대상인 자사고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사고측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평가안이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 기준이다, 기준 점수가 높다,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담긴 평가다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자사고측은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하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재지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슈의 본질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사고는 영구한 학교형태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한시적이고 특수한 고교 형태임.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지난 5년에 대한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임.

## 1) 재지정평가의 정의

자사고(자립형사립고)는 영구한 학교 지위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 받아야만 자사고 지위를 다시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입니다.

자사고는 처음부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운영을 지정받은 한시적인 형태의 학교로 재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구한 자사고의 존속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성과에 대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사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5년에 대한 학교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바로 이번 '재지정평가'이며,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해당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자사고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사고는 다시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표1] 자사고 재지정평가 관련 시행령

<p>◎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p> <p>...</p> <p>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b>취소</b>할 수 있다.</p> <p>...</p> <p>5. <b>교육감이 5년마다</b>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b> 하여 <b>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b>되는 경우</p>
--

[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2) 재지정평가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시 실적이 좋은, 소위 공부 잘하고 있는 학교를 왜 재지정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지정 및 지정취소를 따져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입시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명문고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기준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2014~2015년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도 평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표2]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목적

<p><b>1. 평가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율형 사립고가 <b>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b> 5년 단위로 평가하여 <b>내실있는 학교운영 유도</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li></ul></li><li>○ 평가결과 입시명문교로 운영되는 등 <b>지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u>자율형 사립고의 책무성 제고</u></b></li></ul>
--

[출처 :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안내, 교육부]

2019년 2기 재지정평가 시점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사고는 지난 5년간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지정목적에 무색하게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을 해 왔으며, 고교서열화 문제와 극심한 고입경쟁 유발 등 자사고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었고 자사고가 고교체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사고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을뿐더러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5년간 자사고 지정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는 지정목적에 맞게 강화되어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핵심기준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자사고의 지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이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약속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 여러 요건에서의 감사 지적 사항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반고 대비 최대 3배 이상의 학비를 부담하고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들을 대다수 선점하고 있는 자사고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대학 입시실적에 유리한 학습환경과 그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높은 만족도가 자사고가 요구하는만큼 재지정평가의 핵심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저 일반고에 비해 조금 더 나은 정도일 뿐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지정목적에서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다면 이는 지정목적에 상실한 것이며, 자사고가 굳이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며 일반고에 비해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에서 특혜를 부여받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사고는 이번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 받고, 고교전체에 미치는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자사고가 계속 지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 3) 재지정평가 과정

자사고의 지위로 5년간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현재 전국 43개교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시·도

교육청과 재지정평가를 위한 공동 개발 표준안(평가지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가대상 학교에 해당 시·도 교육청의 운영 성과 평가 계획이 보내졌고, 이제 평가대상 학교는 이를 작성하여 3월 말 경까지 해당 교육청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이후 보고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자사고를 심의·평가한 후 올해 7·8월 경 해당 자사고의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5년 연장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일정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습니다.

자사고의 5년 재지정 및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점수는 교육부 표준안은 70점이지만,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 평가기준 점수는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학교는 자사고로 다시 재지정 받아 5년을 운영하게 되고, 기준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의 3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14.5.19 시행)</p> <p>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b>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b> 경우</li> <li>2. <b>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b> 경우</li> <li>3. <b>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b>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li> <li>5. <b>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b> 경우</li> </ol>
---

[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4) 평가대상 기간

2014년에 1기 재지정평가를 받은 전국 24개 자사고가 2019년 평가대상이며,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가 2기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를 넘은 자사고는 2020년 3월부터 다시 5년간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 **지난 평가지표에 비해 2019 평가지표는 △학교운영 항목, 교육과정운영 항목, 교육청 역량평가 항목 배점이 상향되었고, △재정 및 시설여건 항목, 학교 만족도, 교원전문성 영역의 배점은 하향 조정되었음.** 자사고 지정목적의 핵심기준에 충실한 지표 강화로 평가됨.

1) 재지정 평가대상 자사고 : 전국 24개교

자사고는 2014~2015년 1기 재지정평가 과정을 거쳤고, 다시 5년이 지난 2019년 올해부터 2기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시작됩니다. 2019년 평가대상인 학교는 전국 43개 자사고 가운데 24개에 해당하며, 이후 2020년에 16개 학교, 2022년 2개 학교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평가대상 학교 중 절반이 넘는 13개교가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표4] 2019년(2기)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전국 24개교)

서울(13개교)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송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등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강원 (1개교)	민족사관고
경기 (1개교)	안산동산고
경북 (2개교)	포항제철고, 김천고
강원 (1개교)	민족사관고
대구 (1개교)	계성고
부산 (1개교)	해운대고
울산 (1개교)	현대청운고
인천 (1개교)	인천포스코고
전남 (1개교)	광양제철고
전북 (1개교)	상산고

2) 재지정 평가지표의 분석

교육부안을 기준으로 한 2019년 평가지표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등 총 6개 영역 100점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재지정 평가지표를 2014~2015년 당시 재지정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표5] 1기 vs 2기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비교 I

	1기 재지정평가 지표(2014~2015)	2기 재지정평가 지표(2019)
평가영역	■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26~27개 평가지표	■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 ■ 총점 100점 = 교육부 공통지표(88점)+ 교육청 재량지표(12점)
지정 취소 기준 점수	■ 60점 미만시 지정 취소	■ 70점(전북 80점) 미만시 지정 취소
기타 (특이사항)	■ 기준점수 미만인 학교와, 기준점수 이상이나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 '매우	■ <b>기준점수 미만 학교에 대한 2년 유예 및 재평가 조치 금지</b>

<p>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 2년 후 재평가 가능.</p> <p>■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 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취소 가능.</p>	<p>■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 중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b>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미흡(D)"한 평가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 가능.</b></p>
--	---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전북 80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에 대해 지난 평가와 달리 재평가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4~2015년 1기 평가에서는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유예하거나 재평가 기회를 부여했었지만, 이번 평가지표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이 적발되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평가방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자사고의 지정목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미흡'(D) 평가를 받으면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표6] 1기 vs 2기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비교 Ⅱ

		2014~2015년 평가지표 배점	2019년 평가지표 배점
<b>Ⅰ</b> 학교운영	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2.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3.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교운영 영역 26점	학교운영 영역 30점 ↑ (+4점)
<b>Ⅱ</b>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운영 영역 24점	교육과정운영 영역 30점 ↑ (+6점)
<b>Ⅲ</b> 교원의 전문성	1. 교원 충원 및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	교원의 전문성 영역 8점	교원의 전문성 영역 5점 ↓ (-3점)
		재정 및 시설여건 영역	재정 및 시설여건 영역



<b>④</b> <b>재정 및 시설여건</b>	1.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	20점	15점 ↓ (-5점)
	2. 학생 재정지원 현황		
	3. 시설 확보 및 활용		
<b>⑤</b> <b>학교 만족도</b>	1.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학교만족도 영역 12점	학교만족도 영역 8점 ↓ (-4점)
<b>⑥</b> <b>교육청 재량평가</b>	1. 재량평가 지표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10점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최대 5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12점  ↑ (+2점)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최대 12점으로 상향)
	2. 지적사례		

영역별 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기(2014~2015년)에 비해 강화된 영역은 **학교 운영 항목** 배점이 26점에서 30점으로, **교육과정 운영항목**이 24점에서 30점으로,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이 10점에서 12점으로 배점이 상향되었습니다. 반대로 항목 배점이 낮아진 영역은 재정 및 시설여건 항목이 20점에서 15점으로, 학교 만족도가 12점에서 8점으로, 교원 전문성이 8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평가지표에서 학교운영 항목이나 교육과정 운영항목의 배점이 강화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표]와 같이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은 법령에서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을만큼 자사고 평가에 있어 핵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의 지표 강화는 자사고가 원래 지정 목적에 충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입시에 특화해서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표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의 3**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14.5.19 시행)</p> <p>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b>지정을 취소</b>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li> <li>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li> <li>3. <b>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b></li> <li>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li> </ol>
--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서울을 포함한 대다수 자사고측은 영역별 평가기준 배점이 상향 또는 하향 변경된 것을 두고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기준이니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와 같이 어떤 영역이 상향되었고 하향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번 재지정평가 평가지표의 상·하향 기준은 자사고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을 엄격하게 보고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히려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영역 배점이 상향된 이번 평가지표를 두고,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이라고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면 자사고 스스로 가장 중요한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대상이 평가기관을 향해 유리한 지표는 하향하고 불리한 지표는 상향했으니 평가지표를 수정하라는 식의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3) 재지정 평가지표 강화 이유

#### ① 2014~2015년 재지정평가가 주는 교훈

지난 2014년~2015년 시행되었던 1기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기준점수인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들이 상당수 나왔었습니다. 당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또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재지정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자사고 25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총 17개 자사고가 재지정을 위한 교육부 핵심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자사고 재지정평가 원칙대로라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지정취소가 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야 했었지만, 당시 이들 자사고는 모두 일반고 전환을 유예받거나 재평가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 10월 재지정평가 결과 지정 취소 대상학교가 8곳이 나왔고 당시 교육청은 이 중 6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2곳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고자 했습니다.

[표8] 2014년 서울시교육청 1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2014.10월 당시)

재지정평가결과	해당학교	최종결과
지정취소	경희,이대부속,우신, 중앙, 배제고 (6개교)	자사고 지위유지
지정취소 2년 유예	송문, 신일고 (2개교)	자사고 지위유지
5년 재지정	하나, 동성, 이화여자, 한가람, 중동,한대부속(6개교)	자사고 지위유지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 직권으로 다시 취소하였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 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자사고 지정취소로 인한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1)대법원에서 당시 시행령을 해석하는데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 기준점수 미달이었던 자사고들이 모두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2015년 1기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의 학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자사고 지정 취소에 있어 ‘교육부장관과 협의’가 아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표9]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권한 변경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①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b>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b>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b>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b>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공약으로 삼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재지정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감이 기준미달의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게 되면 교육부의 ‘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 자사고측이 현 정부 기조 하에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를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기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0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점수를 부여해 대다수 자사고들을 재지정하게 한 것도 문제였고, 60점도 되지 않던 기준미달의 자사고들에게도 기간 유예와 재평가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 자체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2014년 3월 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에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지정평가에서 기준

1) 참고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미달의 자사고가 나오더라도 그냥 다 봐주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1기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의 평가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재지정 평가지표의 강화는 지난 평가의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1기에 비해 평가기준이 바뀔지 몰랐고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자사고측의 발언은 지난 평가의 맥락에서 볼 때 핑계에 불과합니다.

## ② 지정목적 상실한채 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된 자사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강화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사고의 무분별한 확대가 우리 고교 전체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의 대거 등장은 도입 당시 예견된대로 결국 고교서열화를 확대하여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을 붙이고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로 빠져나가게 하는 등 대다수의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는 성적 및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고교평준화 제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된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사고의 교육이 실제로 다양하게 실시되었는지, 자율권을 오용해 국영수 편중 현상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0년간 계속 있어 왔고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자사고의 학교교육의 다양성은 미약했고, 오히려 국영수 중심 입시 과목의 편중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현재는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재지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1차 재지정평가에 비해서 국영수 편성 비율은 나아졌는지 모르나, 그동안 대다수의 자사고가 주어진 자율권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일반고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 크게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의 결과들은 자사고가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입시에 특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되었습니다. 애초 자사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학교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높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 분리

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교육 내용은 입시 위주로 획일화하면서 대다수 일반고와의 구조적 격차를 만들어 고교체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특화된 소위 명문고를 만들고자 함이 자사고 지정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목적에 따라 자사고의 존립을 결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평가기준 강화에 반영된 것입니다.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를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라는 것은 자사고 평가에 대한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고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 자사고측은 재지정평가를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폐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재지정평가는 지난 5년간 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일 뿐,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했다면 정책기조와 상관없이 기준 미달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함.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심각해진 이유 또한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지난 1기 평가(2014년~2015년)에 비해 지정목적에 맞추어 엄격하게 평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기준 미달일 경우 유예나 재평가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교육당국의 기조 때문에 자사고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사고측은 이러한 평가지표 강화를 두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운운하며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폐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지난 5년간 자사고 운영 성과에 대한 교육당국의 평가일 뿐입니다. 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시된 대로 ‘지정목적에 맞는 자사고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이고, 평가대상에 속하는 자사고가 이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지 못했다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관없이 평가를 통해 우선 지정취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지정목적에 충실히 운영했다면 정책 기조가 어떠하든 다시 5년 재지정을 받게 되는 것이 재지정평가입니다.

현 정부의 공약과 기조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기 때문에, 이미 해왔던 법적 의무인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부터 거부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난 5년간 지정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한데 대한 자사고의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자사고 폐지든 유지든 상관없이 일단 자사고는 평가기간이 도래하면 법적 의무인 평가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평가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일부 자사고들의 태도는 스스로 자사고 재지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같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치겠지만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성적은 없습니다.

■ 서울자사고 22개교는 단체행동을 통해 재지정평가를 거부, 전북 상산고 등은 평가 후 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음. 재지정평가는 자사고의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일 뿐 자사고의 선택사항이 아님.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법 사항이며 자사고 스스로 재지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함.

올해 자사고 평가대상인 서울지역 13개 자사고들을 비롯,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등의 자사고들은 각각의 이유를 들어 재지정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자사고연합과 전북 상산고의 현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 1) 서울 자사고 :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 제출 거부 단체행동.

서울은 올해 13개 자사고가 평가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내년 평가대상 자사고까지 포함하여 서울 자사고 22개교는 지난 25일 학교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단체행동할 것을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자사고측은 현재의 평가기준이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이므로 평가지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재지정평가를 수용하지 않겠으며, 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교들을 지정취소시킨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평가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며, 제출을 기다리되 거부시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서울 자사고측이 주장하는 재지정 평가지표의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 ① 자사고에 불리한 항목 배점이 커지고, 자사고에 유리한 배점은 낮아졌다?

서울자사고측은 자사고에 유리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 만족도나 다양한 진로·인성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에 대한 배점이 낮아졌고, 자사고에 불리한 학교운영·교육과정, 사회통합전형비율, 교육청 지적사항 발생시 감점 등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사고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평가 기준 강화는 지난 1기 평가 이후 꾸준히 요구되어 온 것이고, 특히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배점이 강화된 것은 자사고의 유불리를 떠나서 자사고 평가의 핵심기준이며 정당한 평가기준의 보강입니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나 만족도 조사 등은 자사고가 그 동안 높은 점수를 받아왔던 영역들이나, 자사고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평가라는 목적에 비교해 볼 때 핵심기준은 아니며 비교적 점수 획득이 쉬운 지표이므로 그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높아져 문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전형의 이름입니다. [표]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20% 이상은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10]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의무비율 관련 시행령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p> <p>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b>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b>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중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li> <li>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li> <li>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통합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제3항에 의해 기초 생활 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이상 뽑도록 자사고에 사회적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유은혜 당시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2016년 3년 동안 전국 46개 자사고 중 60%인 28개 자사고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사고는 평균 입학정원의 14%(5,626명)만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였고, 2014년 28개, 2015년 25개, 2016년에는 28개 자사고가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20%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법적 의무인 자사고들이지만 11.9%에 불과했으며, 특히 서울 휘문고의 경우 392명 정원 기준에 사회통합전형 78명을 선발했어야 함에도 당시 16명만 선발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2) 유은혜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09.25.) 참고

[표11] 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현황 (2014~2016학년도)

	2014~2016 입학정원(명) (A)	2014~2016 사회통합전형(명) (B)	선발비율 (B/A*100)
서울 23개 자사고	21,305	2,525	11.9%

[출처: 유은혜 국회의원 보도자료 재가공, (2016.09.26.)]

자사고의 사회통합선발 비율이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시점인 지금 서울자사고측은 사회통합전형 비율의 배점이 높아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사고의 학비 등 부담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자사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성 달성과 교육기회의 공정을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선발 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연히 자사고 평가지표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현재 역시 서울지역 자사고를 포함한 대다수의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자사고도 있습니다.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노력 등을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배점 강화를 문제 삼는 자사고의 태도에 과연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③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의 폭이 커졌다?

앞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 평가지표 영역 중 ‘교육청 재량평가’ 배점을 12점으로 하여 지난 평가지표 대비 2점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의 폭이 2015년 평가시 최대 5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지표에서는 최대 12점까지 감점 가능합니다. 자사고측 평가에 불리하도록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 등 지적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을뿐더러, 과거 자사고에 대한 감사나 지적사례가 크고 중한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사안에 따른 교육청의 공정한 재량평가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표12]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폭 변경

	2014~2015년 평가지표 배점	2019년 평가지표 배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10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12점



<b>6</b> 교육청 재량평가	1. 재량평가 지표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최대 5점)	↑ (+2점)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최대 12점으로 상향)
	2 지적사례		

2) 전북 상산고 :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는 제출, 평가 후 지정취소 시 법적 대응 예고.

①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높다?

전북 상산고 또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기준 점수를 70점이 아닌 80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70점이라는 점수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해 보았을때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자사고 평가기준을 80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기준 점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평가기준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평가기준의 수정 없이 재지정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의 법적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해당하는 자사고입니다.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비율의 법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으며,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재지정평가에 사회통합 선발 노력정도를 포함하여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선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13] 교육부의 구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비율 확대 권장안(2014.10월)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운영

☞ (교육부) 법령 개정, (교육청) 지도·감독 실시, (시행 시기) '15학년도 전형

○ **舊 자립형 사립고(6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

-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  
(예: 4%(‘15)⇒6%(‘16)→8%(‘17)⇒10%(‘18))

\*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하나고는 20%)

※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정도’를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

[출처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확정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3.10.24)]

상산고는 이에 대해 교육부의 권장이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는 법이 아니라 권장이었다, 비율을 올리라고 했으면 올렸을텐데 교육청이 공문으로 따로 권장하지 않았다, 공문의 제목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여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식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다수 다른 자사고가 사회통합 20% 의무비율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데, 상산고는 3% 내외의 선발에 머무르면서도 교육당국의 사회통합비율 확대안을 두고 단지 권장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비율 확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어려운 인재를 양성한다는 상산고의 건학이념에 비춰볼 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상산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을 해 줄 것을 권장하는 것이 꼭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만 평가지표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표]에서 보듯이 2013년 교육부는 상산고, 민사고 등의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를 권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4년 이후 재지정평가에 그 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재지정평가는 자사고의 학교 운영 성과 평가일 뿐 자사고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와는 다른 성격임.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떠나 자사고 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근본적인 교체제 개선 방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전북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 전북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가세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낙후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사고인 상산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명 이유

를 밝히며, 전국단위 자사고에 속하는 상산고로 인해 영입되던 미래인재가 외부로 유출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 반고 전환 공약을 가리키며 언제부터 대통령의 공약이 평가의 원칙이 되었냐고 목소리를 높였 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자사고 문제는 단지 한 지역의 명문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서열화되어 있어 대다수 학생·학부모를 어렵게 하는 우리 고교체제 전반의 문 제를 생각한다면 단지 개별 자사고 또는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여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자사고 가 우리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지표 강화를 통한 봐주기 없는 엄정한 평가는 지난 자사고 재지정평가 과정을 지켜본 국 민들의 요구입니다. 이는 ‘자사고 죽이기’가 아니라 지정 당시 이미 합의된 당연한 법적 절차 입니다. 재지정평가의 결과는 ‘재지정’ 아니면 ‘지정취소’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미달된 기준점수가 나왔는데도 봐주고 그냥 넘 어가는 것이 불공정·불합리한 것입니다. 자사고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학교의 지위가 아닙니 다. 한 번 자사고가 영원한 자사고인 것도 아닙니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받으며 끊임없 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차별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때에만 자사 고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고측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자사고가 당연히 받 아야 하는 재지정평가라는 카드를 들고서, ‘자사고존립 여부’라는 국가적 과제에 몰타기 하지 마십시오. 지난 5년 자사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성실히 받으십시오.

나아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자체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준 미달의 자사고는 지정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자사고는 그 존립 자체로 폐해가 적지 않아 심각하 게 고교 체제 전반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지정평가와는 별개로 자 사고의 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장을 열고, 근본적으로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2019. 3.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